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9년 2월 27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2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3월 11일

제2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도시환경국장 문 경 원

나. 제안이유

- 산간, 계곡 등 자연발생 유원지에 입장하는 입장객에게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으나, 상위 법령인 「폐기물관리법」의 개정으로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」의 폐지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」, 「공공지역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」, 「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중 우

- 본 「구미시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」은
 - 비지정 관광지 입장객에게 징수하던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「폐기물관리법」의 개정으로 징수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